

제260회 임시회
광진구의회

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

2023. 3. 14.

복지건설위원회

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031
----------	------

2023. 3. 14.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3. 2. 27.
- 나. 회부일자 : 2023. 3. 8.
- 다. 상정일자 : 2023. 3. 13.

2. 안건설명

가. 제안설명자 : 이동길 의원

나. 제정이유

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여 사회적 편견과 열악한 자녀 양육환경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·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
다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구청장 및 청소년부모의 책무 (안 제3조 및 제4조)

다.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지원대상 등 (안 제5조 및 제6조)

라.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(안 제7조 및 제8조)

마. 지원 사업 등 (안 제9조)

바.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 및 위원회 구성 등 (안 제10조 및 제11조)

사.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의 위탁 (안 제12조 및 제13조)

아. 중복지원의 제한 및 비밀유지 등 (안 제14조 및 제15조)

라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청소년기본법」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3. 3. 4. ~ 3. 8.) 결과 : 별도 의견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,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윤선영)

의안번호 제2031호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은 2023년 2월 27일 이동길 의원이 제안하여 2023년 3월 13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·회부된 안건임

본 안건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여 열악한 자녀 양육환경으로부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·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출되었음

□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2조 정의에서 “청소년”이란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하며

→ “청소년부모”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

→ “청소년부모 가정”이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 등의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로 명시함

가.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(법률혼 및 사실혼 모두 포함)로 이뤄진 가정

나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근거한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 이뤄진 가정

-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로서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나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

→ 또한, 광진구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 정책에서 소외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

- 안 제4조는 청소년 부모의 책무로서 학업과 취업 및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함

- 안 제6조는 지원 대상에 관한 내용으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(법률혼 및 사실혼 포함)와 그 자녀로 명시하고
-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청소년 부모 가정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
- 안 제7조 지원계획 수립에서는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5년마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
 - ▶ 지원계획의 목표와 기본 방향
 - ▶ 지원계획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
 - ▶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
 - ▶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 - ▶ 그 밖에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안 제8조는 실태조사로써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
- 안 제9조 지원사업의 내용으로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

명시함

- ▶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른 청소년 임신부에 대한 임신·출산 지원
 - ▶ 청소년부모의 학업(대안교육 포함) 및 진로상담, 취업 지원
 - ▶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
 - ▶ 청소년부모 가정의 보건·의료서비스 지원
 - ▶ 청소년부모 가정의 주거 등 생활 안정 지원
 - ▶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
- 또한,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인 또는 기관·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안 제10조 청소년부모 가정지원 위원회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광진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고 자문에 응하도록 함
 - 안 제11조 위원회 구성 등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함
 - 안 제12조와 안 제 13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의 위탁에 대해 명시하고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

기관과 단체와 협력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

- 안 제14조는 중복지원의 제한으로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관련 복지서비스를 제한하도록 함

□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관련 서울시 및 타 자치단체 현황은 다음과 같음

※ 서울특별시 :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

- 서울시 자치구 중에는 서대문구만 조례가 있음

(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부모 가정지원 조례)

※ 그 외, 경기도, 인천광역시, 충남, 전남, 전북, 강원도, 울산광역시
경기도 시흥시, 충남 천안시, 광주광역시 남구·북구, 대전광역시
유성구에 조례가 제정됨

□ 광진구 청소년부모 현황을 살펴보면, 현재 11가구이며 지원가구는 8가구임('22.12.31.기준)

※ 청소년 부모 가구수 : 아동수당 지급 가구 중 부모 모두 만24세 이하 가구

□ 참고로,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은 다음 표와 같음

<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>

(단위: 원)

구분			2인	3인	4인	5인	6인
저소득 청소년	복지급여 (65%)	'22년	1,956,051	2,516,821	3,072,648	3,614,709	4,144,202
		'23년	2,246,501	2,882,630	3,510,627	4,114,947	4,698,188
한부모가족	증명서 (72%)	'22년	2,347,261	3,020,185	3,687,178	4,337,651	4,973,043
		'23년	2,488,432	3,193,068	3,888,694	4,558,095	5,204,146

- ☞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: 복지급여 대상자
- ☞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%이하: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
증명서 발급 대상자(복지급여 대상자 아님)

□ 2023년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음

- ☞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대상 :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24세
이하이고 중위소득 65% 이하인 경우

구 분	지원 대상	지원액	지원방 법	지급시 기	비고
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비	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자녀	자녀 1인/ 월35만원	대상자 계좌입 금	매월 20일	
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	(검정고시 학습지원) 고등학교 및 이와 준하는 학력이 없고, 학업이 단절되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 한부모	연154만원 이내 - 학원비(월30만) - 교재비(월20만) - 학용품비 (연9.3만)	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 입금	수시 지급 (신청 시)	국비50% 시비50%
	(재학생 학습지원) 중·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 한부모	연154만원 이내 - 교통비(월 3만원) - 교복구입비 (1회 50만원 이내)			
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 수당	1년 내 학업·직업훈련·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 ※ 자립을 위해 학업을 지속하는 자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또는 취업훈련 등을 위한 학원 등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	가구당/ 월10만원	대상자 계좌입 금	매월	
명절 격려금	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족	가구당/ 1회 5만원 (년10만원)	대상자 계좌입 금	연 2회 (설,추석)	구비10 0%

※ 광진구 청소년 한부모가족 현황: 2가구 (모자 2) /2023. 2월말 기준.

□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

- 추진근거: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18조의 3(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)
- 추진연혁: 2022년 7월부터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으로 시행
- 사업대상: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 부모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
- 지원내용: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1명당 월 20만원 지원
- 사업기간: 2023. 1. ~ 12.
- 신청처: 아동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신청
- 사업예산: 총 26,400천원 (국:시=50:50)

□ 종합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되었음
- 동 조례안은 청소년기 임신과 출산으로 학업과 취업, 자녀 양육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부모들에게 관심과 제도적 지원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
-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원활한 지원 추진을 위해 이번 제정 조례안은 그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며
-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됨 없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회의록 참조

5. 토론

- 회의록 참조

6. 심사결과

-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